

부산광역시사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 「자연재해대책법」 이 일부 개정, 시행(2005.1.27 법률 제7359호로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대책업무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3. 주요골자

가. 목적(안 제1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위험요인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

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 필요시 추가 위촉
-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 위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과 재난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위촉

라. 위원의 임기(안 제4조)

-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직기간,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 한해 연임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마. 위원회 운영(안 제6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명 검토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 소집

바. 검토의견서 제출(안 제7조)

위원은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

사. 현지조사(안 제8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

4. 검토의견

본 조례제정 건은

-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2005년 1월 27일부로 법률 제7359호에 의거 공포됨에 따라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의 최소화와 예방에 우선을 두는 재해예방행정의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제거 하거나 저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됨
- 그리고 부산진구 등 14개구에서 조례가 제정완료내지 입법예고 중에 있고, 수영구에서는 조례 심의 중에 있음
- 특히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위임근거가 명시 되어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조례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